

「전북형 복지모델」  
JUMP PLUS!!!

# 2022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사회복지정책 제안

2022. 3.

## 전북사회복지연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협의회  
전라북도가족센터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전북노숙인시설협회  
전북노인복지협회  
전북사회복지관협회  
전북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북아동복지협회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정신건강연합회  
전북청소년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전북지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북지회  
한국시니어클럽전북지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전북지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전라북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북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전북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전북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전북지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북지부  
한국학교사회복지사업협회전북지회  
전라북도 14개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 11개 시군사회복지사업회



■ 6.1 지방선거 4대 의제, 14대 핵심공약

**의제 I 사회복지책무성 강화**

- 1. 전북형 자주복지를 위한 복지연대기금 마련..... 4
- 2.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확립..... 5
- 3. 전북형 아동돌봄서비스 협력모델 마련..... 6
- 4.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7

**의제 II 사회복지종사자 권리확대**

- 5.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8
-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권익옹호기구 조성..... 9
- 7. 사회복지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종사자 배치 현실화..... 10

**의제 III 사회복지 제도개선**

- 8. 거주시설 입소기준 현실화 및 의료급여 기준 완화..... 12
- 9.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 도입..... 13
- 10.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전문성 강화..... 14

**의제 IV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1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15
- 12. 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 16
- 13. 맞춤형 노후준비통합센터 지원 강화..... 21
- 14. 전라북도 사회복지연수원 및 복지센터 건립..... 22

■ 6.1 지방선거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제안..... 23

■ 6.1 지방선거 사회복지연대 추진경과..... 73

2022 6.1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은 전라북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51개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 제안한 정책입니다.



**6.1 지방선거  
4대 의제,  
14대 핵심공약**

01



## 전북사회복지연대 6.1 지방선거 복지공약 제안

참여

「전북형 복지모델」로 JUMP PLUS !!!

협력

### 4대 의제

사회복지  
책무성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권리확대

사회복지  
제도개선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14대 핵심공약

1. 전북형 자주복지를 위한 복지연대기금 마련
2.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확립
3. 전북형 아동돌봄서비스 협력모델 마련
4.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5.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권익옹호기구 조성
7. 사회복지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종사자 배치 현실화

8. 거주시설 입소기준 현실화 및 의료급여 기준 완화
9.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 도입
10.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전문성 강화

1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12. 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
13. 맞춤형 노후준비통합센터 지원강화
14. 전라북도 사회복지연수원 및 복지센터 건립

### 주요 과제

1. 전북형 자주복지를 위한 복지연대기금 마련
2.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확립
3. 전북형 아동돌봄서비스 협력모델 마련
- 4-1. 전라북도 보건복지 분리, 사회복지국 신설
- 4-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및 전문성 보장

5.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권익옹호기구 조성
7. 사회복지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종사자 배치 현실화

8. 거주시설 입소기준 현실화 및 의료급여 기준 완화
9.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 도입
10.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전문성 강화

1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12-1.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확대 및 사업비 현실화
- 12-2. 민간중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강화
- 12-3. 주민도움센터 지원강화
- 12-4. 아동청소년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전용시설 마련
- 12-5. 원스톱복지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회관 건립
13. 맞춤형 노후준비통합센터 지원강화
14. 전라북도 사회복지연수원 및 복지센터 건립

## 핵심공약 1

## 전북형 자주복지를 위한 복지연대기금 마련

### 제안배경

- **전북형 복지추진을 위한 안정적 복지연대기금 조성**
  - 전라북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높은 복지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은 좋지 않아 안정적 복지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을 복지재원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정적 복지재정 투입의 한계**
  - 전라북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전체 예산 대비 약 39.2%를 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높은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21.3%(2021년 말 기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필요한 자원조달**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라북도는 국가와 함께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복지재정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복지재원의 확보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행정기관과 민간 등이 공동의 노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전라북도의 시민사회와 민간인 함께 참여하여 지역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복지연대기금 조성(복지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재단 설립 등)
- 전라북도 복지연대기금 조례 제정(복지연대기금 재단 설립, 전라북도의 기금확보 노력 등)

## 핵심공약 2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확립

### 제안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기준 미흡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존재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의 증가와 안전한 소득보장정책 지원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 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도 증가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호 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전라북도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관련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전라북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공적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최근에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원 범위확대와 지원금액의 확대 등을 통한 전북형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정책제안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정립**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핵심공약 3

## 전북형 아동돌봄서비스 협력모델 마련

### 제안배경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통합 및 긴밀한 협력 체계 필요**
  - 아동 돌봄서비스는 학교돌봄(초등돌봄)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기관의 협력과 연계를 지원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아동돌봄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 체제를 마련하여 선도적인 전북형 아동돌봄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의 부재**
  - 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이 있음.
  - 이는 전라북도 위탁사업으로 인력과 예산이 10년째 동결되어 사업의 확장과 더 많은 돌봄기관 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 도내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돌봄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과 학교돌봄 사업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나 연계 기관이 부재함.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중 필요한 맞춤형 돌봄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돌봄 소외 아동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북형 아동돌봄서비스 협력 모델 개발과 운영이 요구됨.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정책제안

- 전북형 아동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기관 마련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북형 아동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핵심공약 4****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4-1. 전라북도 보건복지 분리, 사회복지국(가칭) 신설****제안배경**

-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타 사회정책(경제, 건강, 안전, 주거, 문화, 환경, 고용 등)과의 긴밀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또한, 감염병 관리 등으로 보건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음.
- 전북복지 실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여 사회복지국 신설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 지역은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부담과 빈곤·불평등 증가,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증가, 사회적 돌봄 대상자 증가, 감염병 관리 등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보건과 복지의 통합운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각 과(課)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면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행정 구조임.
-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과 복지 부문을 구분하여 사회복지국을 신설함으로써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복지 관련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이행으로 전북형 복지모델로 한단계 나아갈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을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과 복지로 구분하여 사회복지국 신설

## 핵심공약 4 | 도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 4-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및 전문성 보장

**제안배경**

- 복지 욕구의 다양화, 세분화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역량이 있는 인력으로 맞춤형 전문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 최근 복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상담 내용도 심화되고 있어, 민·관 연계가 활성화 되는 등 고도의 전문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로 하는 시기임.

**현황 및 문제점**

- 전북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조직되어 있으나, 2021년 12월말 기준 전문직 팀장 배치는 42% 그치고 있고, 일부 시·군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원의 상시 결원과 복지 이외의 업무 등이 분장되어 있어 효율적인 복지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태임.

• 전북 맞춤형복지팀장 배치 현황 (2021.12.31.기준)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맞춤형 복지팀	244	35	27	29	23	23	19	14	11	6	7	12	11	14	13
사회복지직 팀장	103	11	13	13	9	13	9	8	2	1	5	5	4	7	3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 원칙)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임.

**정책제안**

- 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2배 증원
- 복지부서장 및 팀장 사회복지직 배치로 전문성 강화

## 핵심공약 5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1

## 제안배경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확산
  - 서울('11년), 제주('15년), 인천('20년), 대구, 부산('22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의 단일임금체계 도입 중
    - 서울의 경우 21년까지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처우를 보장하여 단일임금체계 완성
    - 지역별로 사회복지사의 임금 및 처우 격차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의 임금체계 상이
  - (보건복지부)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제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차별적 기준으로 인력 채용 및 근속연수 등에 악영향
    - (유형별)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각각의 상이한 인건비 기준 존재
    - (지역별) 현행 서울,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 개별기준 존재('22년 대구, 부산 개별기준 적용 예정)
    - (관리주체별)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부처에 따른 개별기준 존재로 임금 격차 발생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의 보수 수준 향상
  -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복지부와 지자체는 민간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의무화.
    - 복지부와 시·도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음.

## 정책제안

- 전북형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연차별 처우개선 계획 발표

## 핵심공약 6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권익옹호기구 조성

### 제안배경

- 전북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
  - 2020년 전북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및 정신건강 조사(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요청사항의 1순위 휴가, 2순위 종사자 안전 및 인권옹호 조례제정, 3순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수준의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경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한 전북의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20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는 63.1%(394명), 클라이언트 폭력 중 언어폭력이 49.4%로 가장 높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및 안전 위협의 공포나 두려움 경험’이 41.2%, 신체적 폭력 35.9%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폭력과 맞물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의 위협이 노출됨.
    - 2021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내놓은 ‘사회복지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함.

### 관련근거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2조(인권 및 권리 옹호)에 근거한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 도민 전체의 포괄적 인권 부서인 도 인권담당관실이 아닌 별도의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 기구를 독립 조직으로서 운영,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센터(인권센터)’ 설치운영

## 핵심공약 7

## 사회복지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종사자 배치 현실화

### 제안배경

- 전북지역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 처리 등 업무과중에 따른 소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음.
-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차 사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 **인력부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수요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소규모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1-2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어 업무과중에 따른 소진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차사용 등이 어려워 이직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 발생
  - 사회재활교사 외 인력이 없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사무행정업무를 겸하고 있어 고유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간 공백과 내용 질적 저하 발생
- **시설운영 법정 최소인력 미충족**
  - 법정 최소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각 영역별 기능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며,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 장시간 노동에 노출**
  - 2018년 말 기준 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일주일에 55~60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는 2.4%,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17.5%로 나타나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 정책제안

-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 인력배치 계획 수립
- 법정인력 미배치된 사회복지시설 법정인력 배치 기준 준수

**핵심공약 8****거주시설 입소기준 현실화 및 의료급여 기준 완화****제안배경**

- 일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입소기준 인정점수(240)을 받지 못하여 지역사회 내 방치됨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주시설의 이용 장애인이 의료수급에 탈락(의료급여자격상실)이 되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보호자 외면으로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되어짐.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중증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며 성인의 경우 240점 이상을 받아야 함. 국민연금공단의 조사표 기준 문항별 점수 편차가 크고 당사자 장애인의 사회성 및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조사자에 따라 점수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주거지원을 위해 시설퇴소를 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시도해보지만 지역적응실패로 인해 시설재입소를 해야 할 경우 인정점수 240점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도 못하고 지역돌봄도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됨. 또한 시설입소하여 생계급여는 지원받지만 부양가족의 소득 변화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탈락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의료비 책임을 못 지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됨. 기저질환이 많아 치료와 치료비가 많이 든 거주장애인에게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됨.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60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8page(입소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동법 제17조(급여의종지 등)

**정책제안**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나 시설입소를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원 현장조사 시 시·군 복지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하며, 의료급여 탈락자들에게는 한시적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함.

## 핵심공약 9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 도입

### 제안배경

- “최저임금법 제외 인가 제도 허점...도내 장애인 저임금 노동 만연”  
(전북도민일보 2021.10.17.)
  - 직업재활시설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만성적인 저임금 상태.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보충급여 제도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그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의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취업한 곳이 일반 기업이거나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급여의 하한을 두지 않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됨.
-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에 더해, 일부 보호작업장 등에서는 구조적인 인건비 부담과 낮은 근로능력을 이유로 장애근로인과 짧은 시간(적게는 1일 1~2시간) 근로 계약함에 따라 비상식적이며 반인권적인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임.
-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기업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경제 주체로서 경쟁력이 낮아,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학생들은 그 숫자(도내 2021년 2월 졸업 장애학생수 364명)가 계속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고, 그 일자리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 임.

### 관련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2조
- 『최저임금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제4조

### 정책제안

-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충급여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 법정 최저임금의 50%를 보충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부담을 지자체가 나눠짐으로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실질적 폐지를 이끌어 냄”

**핵심공약 10**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전문성 강화**

**제안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복지 수요 학생이 증가하고, 소득 중간 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과정·결과가 하위 계층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년 4월 아동권리보장원 조사 결과, 5시간 이상 홀로 가정에 있는 아동 27.7%
  - 교육 분야 양극화 산출 결과,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학습시간, 부모의 학습지원 등에서 중간집단이 하향으로 편향된 경향성이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2020)
- 교육복지 대상(저소득층 학생)은 복합적인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별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함.
- 교육복지 대상(저소득층 학생)을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영역(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이지만, 전라북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는 15%에 불과함.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북도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전문인력 배치 저조
  - 전라북도 학교(초,중,고,특) 778개교 중 120개교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음. 따라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율은 전라북도 전체 15% 정도에 불과함.
  - 전라북도 아동빈곤율은 전국 최대이며, 코로나19, 공장이전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함
  - **고등학교 학생 돌봄·안전망에서 사각지대 발생** - 현재, 초·중학교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학교급 간 학생 중심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짐. 따라서, 고등학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 예시) 중학생 때 관리하던 비행 청소년을 겨우 설득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는데 거기서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돌봐주는 인력이 없어 자퇴함(매일신문, 2021.12.7.)
- **학교 내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배치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우대 조항 신설 필요**
  - 학교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적 수련을 받은 고급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제도가 시행됨.(2020.12.12.)
    -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건: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후 1,000시간 수련 후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함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20년 12월 12일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2020.11.30.)

**정책제안**

-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 학교내 사회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 확대 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우대 조항 신설

## 핵심공약 11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제안배경

-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젊은세대의 노인부양의무 가중 가속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노인빈곤 심화의 지속
-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변화 요구(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분야 제시(전북 노인인구의 특성, 지역 환경의 특성 미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의무 가중 가속화로 젊은 세대의 지역유출이 가속화될 것임.**(지역 인구의 감소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대략 21.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음(전라북도 2020. 2021「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세미나」)
  - 전북의 노인인구는 2018년 대비 2045년 두배가까이(34만6천여명 → 72만9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대략 41만명 감소(125만여명 → 84만6천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위 자료)
- **단기간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노인빈곤은 심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변화 요구(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 전북의 베이부머세대는 노후준비가 잘 안된 세대임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세대로,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며, 취업의 이유로는 노후준비 및 생계자금 마련인 것으로 조사됨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분야 제시가 아닌 전북에 맞는 노인인구의 특성, 지역 환경의 특성 반영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취약**
  - 전북의 특성에 맞는 현장맞춤형 일자리개발을 위한 기초지자체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일자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취약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책제안

- **한국시니어클럽협회전북지회가 전북 노인일자리개발과 개발시스템 구축의 거점 역할**
  - 지역 노인일자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보다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세분화 및 개발 필요**
  - 획일적인 수요처를 통한 사업개발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담기관의 직접 사업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인력지원의 법적 근거 필요,
- **전라북도 15개 시니어클럽이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 시스템구축**
  - 현장조직의 일자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핵심공약 12

## 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

### 12-1.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확대 및 사업비 현실화

#### 제안배경

- 사회복지관은 1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사회복지시설로 지역사회복지를 선도하고 감당해온 대표적인 주민이용시설이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요 지역사회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주민 복지욕구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사업량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함에 있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미설치된 도내 지자체에도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운영되어 지역사회안에서 복지문제해결은 물론이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관은 국·도비 예산지원 없이 전액 각 시·군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된다. 다만 여기에 더 주목할 것은 운영비 외 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전입금을 제외한 자원은 확정되지 않은 비정기적인 기금이다. 때문에 해마다 사업계획에 의거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북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18개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5개소, 군산 2개소, 익산 3개소, 정읍 1개소, 김제 3개소, 남원 1개소, 부안 1개소, 고창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지역에는 여전히 사회복지관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완주군이 현재 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 미설치 지역인 5개 지자체가 지역사회복지관 부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다양한 복지혜택(사례관리, 복지서비스제공, 주민조직화사업 등)으로부터 소외될 염려가 있다.
- 복지관별 **일천만원(10,000,000원)**의 지역복지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소 복지관별로 **1억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동시행규칙 제23조

#### 정책제안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이상 5개 군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 지역사회복지관 사업비 지원금 현실화(**복지관당 현 10,000천원 → 100,000천원으로 증액지원**)

**핵심공약 12****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12-2. 민간중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강화****제안배경**

- 사회복지 영역이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면서 민간 자원 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한 세심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함.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 민·민, 민·관 협력 파트너십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은 일부 시군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또한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민간중심 복지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확대마련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중심 대표기관이면서 법정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단위 광역 사회복지협의회 1개소와 14개 시군에 기초사회복지협의회 14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조사연구, 정책제안, 자원배분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민간영역의 사회복지발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민간중심 대표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민간복지의 역량을 키우고, 공공-민간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근거**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 예산근거 : 동법 시행령 제17조 “협의회의 운영경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책제안**

- 전라북도 및 기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핵심공약 12****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12-3. 주민도움센터(舊.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지원강화****제안배경**

- 현재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도움센터(舊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사업의 주된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즉 고령자와 장애를 가진 거동불편인 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 전라북도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주민도움센터의 정책적 의미와 성과 등은 우수시책으로서 지속적 평가와 실증적 실천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연구된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의 효과성 평가’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도움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종사자의 높은 직무 가치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평균 185만원)과 대인 스트레스, 역할과다는 잦은 이직의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주민도움센터 직무의 연속성이 매우 취약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 현재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는 주민도움센터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여 동종 복지종사자의 평균 임금에 준하는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추진될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맞추어 추진주체 또는 협력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근거**

- ‘2021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효과성 평가 연구보고서’(2021.8.)

**정책제안**

- 주민도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 전북도 특수 시책으로서의 주민도움센터사업의 성과개발과 확장성 제고

**핵심공약 12****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12-4.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마련****제안배경**

- 아동청소년 전용 시설 마련 필요
  - 초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모든 대상을 지원했던 사회복지관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점점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의 건전한 놀이, 오락 기반한 보편 통합 기관의 부재
  - 아동기는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발달시기로 초기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
  -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기관은 예방적 서비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임.
  - 아동청소년의 체육 문화 야영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하나 이를 통합하여 제공할 만한 전용시설이 부재함.
  - 따라서 체육 문화 복지 등 각종 편의를 갖춘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과 기관이 마련되어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관련근거**

- 「UN아동권리협약」제 3조, 제27조, 제31조

**정책제안**

-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원스탑 전용 복지관(가칭) 설립 운영
  - 전라북도 아동청소년 교육, 여가, 진로, 놀이, 체육, 문화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모델 확립

**핵심공약 12****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지원강화****12-5. 지역별 원스톱복지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회관 건립****제안배경**

- 민간복지체계의 구심체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14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독자적 건물이 없이 임대건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연합기구로서 지역 내 사회단체들의 위상과 규모에 비해 월등한 타당성(복지관련 법, 제도, 정부정책 예산비중 등)과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교류 협력과 자원의 연계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취약한 물리적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협의회는 민·민, 민·관 협력의 산실이 되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거버넌스 행정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사회가 체감하는 복지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의식 함양과 조사연구, 각종 사회복지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복지의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공간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복지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보편적 복지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우수사례의 모델이 될 것임.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정책제안**

- 도내 14개 시군 보건·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매칭지원

## 핵심공약 13

## 맞춤형 노후준비통합센터 지원강화

### 제안배경

- 2022년부터 시행되는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는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단편적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음**
-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함께 노인의 욕구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 즉, **본인이 원하는 노년 생활 영위를 위해, 전문상담을 통한 건강, 주거, 여가, 소득,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계획·제공·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및 온라인으로 노후준비 종합진단과 전문상담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국 100여개 국민연금공단을 거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공단의 특성상 제공 서비스가 주로 노후소득과 같은 재무상태를 위주로 분석되고 있어, 이와 별개로 노인의 건강, 주거, 여가, 교육 등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의 노후생활 또는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상담이 부재한 상황임
-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이와 관련한 상담과 연계가 일부 가능하지만 현재는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의 부재 역시 한계임.

### 관련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11호,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

### 정책제안

- 전문상담과 서비스연계, 교육지원 등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통합서비스 제공(노인복지관 인적인프라 적극 활용)
- 인생 2막의 실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및 노후설계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전문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 상담, 심리 등 노후설계 전문인력 지원

**핵심공약 14**

**전라북도 사회복지연수원 및 복지센터 건립**

**제안배경**

- 전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환경구축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양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원이 필요함.
- 또한 전북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복지기관이 한 공간에 상주할 경우 기관 간 연계협력, 협의조정 등의 연결망 구축으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회관은 500평 남짓 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다양한 복지기관이 상주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전북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는 생활 및 이용시설 등 12,640명에 이르고 있음.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전북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사회서비스원, 협의회, 사협회, 공동모금회, 직능협회 등등)들이 한곳이 있지 않고 흩어져있어 신속한 정보교환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전북사회복지회관은 전주시 소재 지상 5층, 연면적 500평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직능협회 3개소와 도단위 기관 3개소,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공간으로 교육환경과 원스톱복지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 전국 현황 :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 회관(센터) 운영

구분	면적	규모	구분	면적	규모
인천	7,025㎡	지하1층, 지상7층	전북	1,128㎡	지상5층
광주	2,420㎡	지하1층, 지상2층	강원	3,450㎡	지하1층, 지상5층
세종	552㎡	지상2층	경남	28,264㎡	지하1층, 지상3층
제주	2,014㎡	지상2층	충북	4,121㎡	지하1층, 지상5층

\* 서울 및 대전 : 복지타운 이용

- 전북형 사회복지연수원을 건립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공간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복지기관이 한자리에 있음으로써 복지타운을 형성, 연계협력, 협의조정 및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등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북형 사회복지연수원 및 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봄.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정책제안**

-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중심 기관이 상주하여 연계 협력, 협의조정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연수원 및 복지센터 건립

# 6.1 지방선거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제안

02



□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제안사항

분야	NO	단체명	정책 제안사항	페이지
아동·청소년	1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전북협의회	• 보편적 지역사회 아동복지 환경개선	27
	2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전북지부	•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차별화된 처우개선과 아동입퇴소 방향 제시	30
	3	전북청소년쉼터협의회	• 보호청소년 보호기간 종료 ‘자립정착금’ 지원 필요	31
	4	전라북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 청소년 이용공간 확대 • 전북 버스정류장 및 주요거리 CPR, AED 시행법 기재의무화	32
	5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전북지회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전문성 강화	37
노인	6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전북지회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한 맞춤형 노후준비 통합지원센터(사업) 현실화	39
	7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41
	8	한국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전북지부	• 전북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43
장애인	9	전북소규모장애인 거주시설협회	• 소규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4
	10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회전북협회	• 거주시설 입소기준 적용현실화 및 의료급여 기준완화 • 사회복지종사자 현실적 직책수당 마련	46
	11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전북협회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보충급여제 도입	48
	12	한국장애인주간보호 시설협회전북협회	• 전라북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질적서비스를 위한 제안	50
	13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전라북도협회	• 전북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법정최소인력 배치	51
	14	한국정신요양시설 협회전북지회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인원확충	52
여성	15	전라북도여성폭력 상담소·시설협의회	• 여성폭력상담소및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망강화	55

분야	NO	단체명	정책 제안사항	페이지
지역복지	16	전북사회복지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내 지역사회복지관 추가설치</li> <li>• 전라북도내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비 증액지원</li> </ul>	57
	17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전북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별 운영지원</li> </ul>	59
	18	전라북도가족센터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권역 가족센터 확대 설치</li> </ul>	61
	19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강화</li> <li>• 전북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li> <li>• 전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및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강화</li> </ul>	62
	20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li> <li>•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권익옹호 기구 조성</li> </ul>	65
	21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단위 지역 사회복지회관 건립</li> <li>•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li> <li>• 주민도움센터 정착운영 강화</li> </ul>	67
	22	전라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중심의 맞춤형 전문전달체계 구축</li> </ul>	70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라북도협의회			
설립연월일	2003. 3.	대표자	장철규
회원시설수	200개소	회원종사자수	650여 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등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해 통합교육 및 사회복지활동 전개</li> <li>• 지역아동센터 상호 간의 연대활동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li> <li>•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시설 의무교육</li> <li>• 회원기관에 대한 자원 배분 사업</li> </ul>		

### □ 보편적 지역사회 아동 복지 환경 개선

#### 제안배경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8년 4월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대회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은 2020년까지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2022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힘.
- 2018년 4월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을 받음.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 및 확보현황」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진행되었으나 매년 계획대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 ‘18 권미혁의원, ‘19년 김명연의원, ‘20년 김성주의원, ‘21년 이광재의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통해 비분권 시설「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비분권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총7개 사회복지시설임.

#### 현황 및 문제점

1. '21년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운영비는 619만원, 아동 1인당 월 평균 24,370원 / 1일 기준 1,219원 (\* 이용 아동 25.4명 센터, 월 20일 기준 산출) 프로그램비로 (월 운영비 10% 사용) 운영되었음. 22년 예산 증액 4%라서 최저인건비 상승률 5.1%에 못 미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최저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동프로그램비를 운영비 중 10% 사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따라 아동프로그램비를 운영비 중 7~8%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2. 코로나 19로 사회적 돌봄 환경변화(긴급 돌봄의 장기화, 온라인 학습지원 일상화, 급식(도시락) 배달 등)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확보 시급
  - ※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 경험 (육아정책연구소 20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구 분	종사자 수	근무시간	사회복지경력	지역아동센터 경력	연령
시설장	4,081명	9.4시간	11년5개월	9년8개월	51.9세
생활복지사	5,344명	9.1시간	5년2개월	4년7개월	41.7세

※ 출처 : 2019년 12년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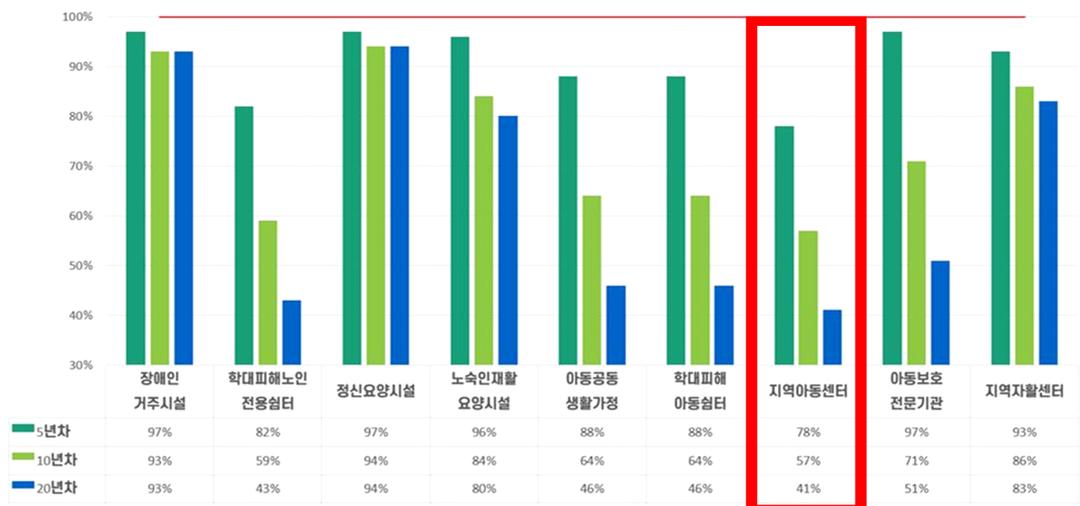
3. 코로나 19로 사회적 돌봄 환경 변화 (긴급 돌봄의 장기화, 온라인 학습지원 일상화, 급식(도시락) 배달 등) 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확보 시급

<국가예산 및 최저임금 대비 지역아동센터 예산>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전체예산 (증액률)	469.6조 (9.5%)	512.3조 (9.1%)	558.0조 (8.9%)	604.4조 (8.3%)
지역아동센터 총예산 (증액율)	177,027백만원 (11.6%)	183,019백만원 (3.4%)	187,418백만원 (2.4%)	195,589백만원 (4.4%)
1개소당 월 지원단가	529만원 (2.5%)	569만원 (7.6%)	619만원 (8.8%)	639만 (3.2%)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상승률)	1,745,150원 (10.9%)	1,795,310원 (2.9%)	1,822,480원 (1.5%)	1,914,440원 (5.1%)

4.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중 가장 낮은 종사자 처우로 인해 종사자 고령화,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 아동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초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가정환경의 아동들에게 교육과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22년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상승률 5.1%에도 못미치는 개소당 증가율 3.2%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려움 가중되고 있음. 또한 시도별 호봉제 도입에 따라 시도간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국고시설(보건복지부 소관) 인건비(기본급) 지급율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3.30.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국고지원 지원도 포함됨. (2018.12.11.개정) 즉「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지방이양 모두 포함 명시)로 함.
- 동 법률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정책제안**

- **보편적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 및 안전망 구축**
  1.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 폐지
  3. 지역아동센터 공간 안정 및 시설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4. 전국 1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호봉제 적용을 통한 사회복지 단일임금제 실현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정규 돌봄 인력 추가 배치
  6.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운영비 분리교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전북지부			
설립연월일	2008. 9. 23.	대표자	김일한
회원시설수	39개소	회원종사자수	39개소*3명=117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및 그 아동들을 지원하며, 회원간의 연대활동과 아동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및 양육, 그룹홈 활성화 사업, 연대사업 등</li> </ul>		

## □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차별화된 처우개선과 아동입퇴소 방향제시

### 제안배경

-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차별된 임금제도 및 과도한 근무시간**
  - 아동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같은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시설의 설치 및 휴업·폐업, 보호아동의 입·퇴소, 관리감독, 시설평가 등이 동일하지만 아동그룹홈은 가이드라인 미적용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차별 받고 있음.
  -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보육원 같은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인 그룹홈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책적으로 소규모를 지향하고 있으나 소규모 그룹홈은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정하여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또는 시간대비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직 및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참고. 아동복지시설운영안내, p146, 205)
  - 또한 근로기준법 및 아동복지시설사업 안내에 의하면 종사자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아동그룹홈은 365일 24시간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주당 최대 5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형편임. 그렇다 보니 시설장 및 보육사는 휴일없이 근무하거나 연차이용 및 안정적인 휴무를 이용할 수 없음. (참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안내, p189)
- 아동 입소 및 퇴소**
  - 아동의 입소 및 퇴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때, 아동의 의견과 또 보호자(아동친권자및시설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 및 보호자가 원할 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수 있는 절차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동복지 종사자들(그룹홈)에게 보수 및 처우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근로시간 및 인건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함.
  - 아동의 입퇴소 절차 과정에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과 보호자가 요구 시 심의위원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적극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다양한 직력이 포함되어 다각적으로 심도 깊은 회의가 이루어짐으로 아동이 최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전북청소년쉼터협의회			
설립연월일	2013. 2. 3.	대표자	정진해
회원시설수	6개소	회원종사자수	41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 부적응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복지, 보호, 복귀, 상담, 연계 등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목적</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정책연구, 포럼</li> </ul>		

## □ 보호 청소년 보호기간 종료 “자립정착금 지원”

### 제안배경

-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공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매년 발생하는 보호아동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퇴소할 때에는 적용되지 못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소 청소년연령 9세~24세)

### 현황 및 문제점

- 전북지역에 익산일시쉼터(고정형),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군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총 6개 청소년쉼터 시설에 매일 약 60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 일시쉼터는 1주일간 보호되며 단기, 중장기로 연계하며 (기타시설)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을 지원한다.
- 단기쉼터는 3개월간 보호되며 2번 연장하여 최장 9개월간 보호가 가능하며, 중장기 또는 가정복귀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지도(LH 임대주택 사업신청)
- 중장기쉼터는 3년간 보호되며 연장 가능하여 24세가 되면 퇴소하게 된다.
- 장기간 입소한 청소년들이 퇴소할 때에 아동복지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한 부분.

### 관련근거

- 아동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 정책제안

- 전북지역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장기적으로 입소하여 생활한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립연월일	1997. 9. 26.	대표자	김익숙
회원시설수	-	회원종사자수	11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등 종합적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플랫폼 역할 수행</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실행지원, 청소년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li> </ul>		

## □ 청소년 이용공간 확대

### 제안배경

1. 청소년 인구수에 비례한 청소년수련시설 부족으로 청소년 자치 활용 공간 필요 ‘청소년 5,809명이 이용할 수 있는 1개의 청소년이용시설’
2.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아닌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2020 전라북도 청소년정책수요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전북연구원)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에 설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총 55개이며 이 중 이용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은 30개로 전북지역 청소년인구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2020년 전라북도 청소년인구 대비 시설수를 살펴보면 만9세~만18세 청소년 5,809명이 1개의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라북도청소년시설현황>											<전라북도 시군별 청소년 규모>							
구분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 기타	계	상담복지 센터	학교밖 지원 센터	성문화 센터	청소년 쉼터	합계	지역	연령대				비율(%)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관	아영장	유스 호스텔									만 9-12세 (초4-6년)	만 13-15세 (중학교)	만 16-18세 (고등학교)	계(명)	
전북	11	19	12	3	9	1	55	15	10	4	5	89	전북	66,977	49,651	57,656	174,284	100.0
전주	1	4			1		6	2(전북)	2(전북)	1	3	14	전주	27,217	20,306	23,619	71,142	40.8
군산	1	1					2	1	1	1	1	6	군산	10,671	7,576	8,626	26,873	15.4
익산	1	1			1		3	1	1	1	1	7	익산	10,392	7,941	9,336	27,669	15.9
정읍	1	2					3	1	1	1		6	정읍	3,600	2,756	3,379	9,735	5.6
남원	1	1	1				3	1	1			6	남원	2,693	2,125	2,455	7,273	4.2
김제	1	2	3		1		7	1	1			9	김제	2,381	1,775	1,984	6,140	3.5
완주	1	1	1	1	1		4	1	1			5	완주	3,567	2,417	2,413	8,397	4.8
진안	1	1	1	1			3	1				4	진안	604	471	572	1,647	0.9
무주	1	1	3	1	1		7	1	1			9	무주	721	530	568	1,819	1.0
장수		1			2		3	1				4	장수	682	474	495	1,651	0.9
임실		1	1				2	1				3	임실	712	464	587	1,763	1.0
고창	1	1					2	1	1			4	고창	839	659	731	2,229	1.3
부안		1	2		2		5	1				6	부안	1,548	1,155	1,531	4,234	2.4
합계	1	2	2	1	3	1	3	1				4	합계	1,350	1,002	1,360	3,712	2.1

출처 : 2020 전라북도 청소년정책수요조사 및 발전방안(전북연구원)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02)"

-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카페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알지 못하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모임활동이나 자치활동을 해야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책제안**

1.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전라북도 내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 리모델링
  - 전라북도 내 지역의 폐교, 사용하지 않는 공간(사무실 등)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
    - 1) 리모델링 진행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2. 지자체 군청, 시청, 도청 등 공공건물의 회의실과 같은 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치 공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 청소년들이 자치적인 활동 및 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공간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건물에 자치공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간대로 예약하며 사용하는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치활동이외의 진로특강, 체험강의, 소그룹 강의 등 강사분들을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다.

**□ 전북 버스정류장 및 주요 거리 CPR, AED 시행법 기재 의무화**

**제안배경**

1. 해년마다 약 3만명 정도의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함

**현황 및 문제점**

1. 해년마다 약 3만 명 정도의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정지 환자 건수는 30,539명, 2019년 30,782명에 달한다. 하지만 생존율은 2018년 8.6%, 뇌기능 회복률은 5.1%에 불과하다. 특히 급성심정지는 다양한 활동 중 **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 근무 중, 여가활동 중에도 발생했다.

2.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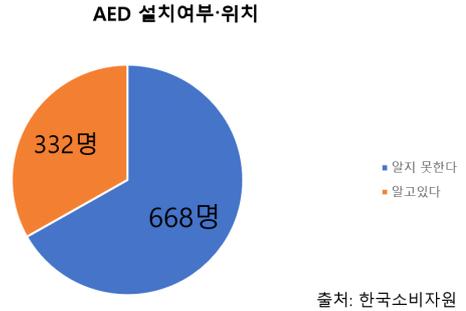
-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에서는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른 환자 생존율의

즉각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본 참가 팀은 전라북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급성심장정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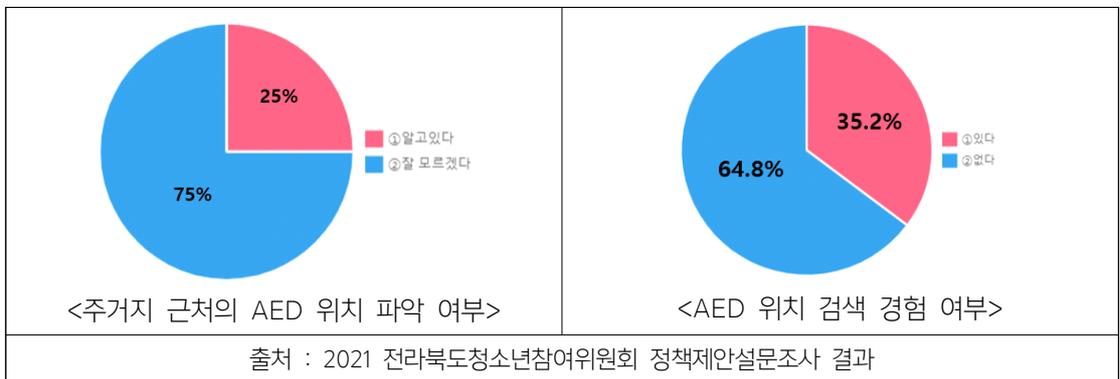
### 3.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잘 모르고, 사용법에 미숙하다.

AED 설치여부 및 위치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 보면, 알지 못한다는 668명(66.8%), 알고있다는 332명(33.2%)로 66.8%의 일반인이 AED 위치를 모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학교 회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동 심장충격기의 위치는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이트의 존재를 잘 모르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평상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중 자동 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프1> 전국 급성심정지 발생건수 (2017년~2019년)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

-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에 CPR(심폐소생술)과 AED(자동심장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대다수 일반인들은 자동심장 충격기의 교육 경험이 없고, 설치 여부와 위치조차 모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1월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은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낮다.** 그리고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66.8%는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 2021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의 주거지 **근처의 AED 위치를 모른다는 답변이 75%**를 차지했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조차 **AED의 위치를 검색해 보지 않은 경우가 64.8%(149명)**였다. 이에 본 참가팀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전북 내 주요 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홍보판을 활용하여 CPR, AED 시행법과 가까운 AED 위치를 의무적으로 게재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 2021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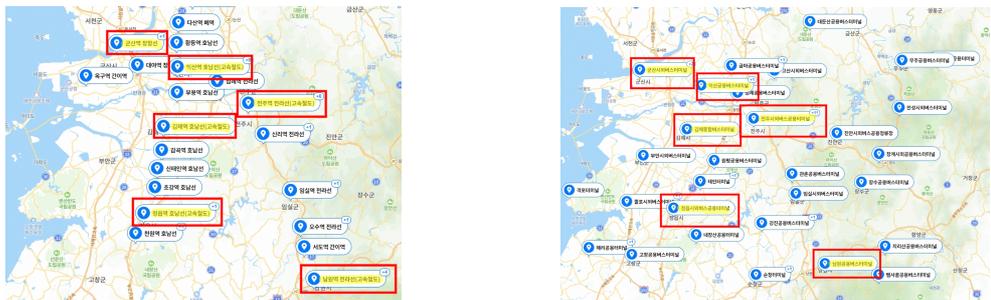
\* 우선적으로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에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좋을 시 전북의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정책제안

1. 전북 소재지의 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근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다.

- 심폐소생술 방법 : 환자 반응확인, 119 신고, 가슴압박,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전원켜기, 패드부착, 리듬분석, 시행버튼 등
- 가장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 주요 환경 정류장 주변 공공기관 및 설치 장소 안내 등

• 홍보물 게재 장소(안)



▲ 전북지역 역, 시외버스터미널 장소

• 홍보물 부착 위치(안)



\* 버스정류장의 홍보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형식의 홍보 장소가 지자체에 이미 존재할 시, 대체할 수 있다.

• 홍보물 내용 예시(안)

① 가로형 안내문

본 안내문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하는 '2021 청소년참여예산에 구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 기억해줘, 작은 기적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기억하기

### 심폐소생술 방법

- 1 반응의 확인
- 2 119 신고요청
- 3 호흡확인
- 4 가슴압박 30회 시행
- 5 인공호흡 2회 시행
- 6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진행해주세요.

### AED 사용방법

- 1 전원 켜기
- 2 패드를 오른쪽 생을 어깨와 왼쪽 윗두 배꼽쪽 아래 부착
- 3 심장리듬 분석
- 4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가장 가까운 AED 위치 찾기  
\* AED가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주세요.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예산센터 063.232-0479 | 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② 세로형 안내문



2. 홍보물 운영 관리는 각 지자체의 교통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관리부서 제안 : 전주시청 시내버스 승강장 담당과(2021년 기준)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정책	전주해피버스365사업, 시내버스정기권, 시민의버스위원회 등	063-281-2969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노선	시내버스 노선 사업계획 변경개선, 노선관련 불만 신고 접수처리, 마을버스 도입 및 운영 등	063-281-5104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노선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 상생협의회 운영, BRT 용역 추진 등	063-281-5106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	시내버스 승강장 등 조성 및 유지관리, 승강장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전자노선도 운영 관리 등	063-281-5107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	시내버스 결행 등 민원처리, BMS 유지관리,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지도 단속 등	063-281-2967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	모심택시 운영관리, 시내버스 차령연장 신고수리 등	063-281-5108

▲ 전주시청 홈페이지 조직도(2021)

- 위와 같이 전주시청 담당과(2021년 기준)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군산시청 담당과(2021년 기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익산시청 담당과(2021년 기준) ‘건설국 교통행정과’, 정읍시청 담당과(2021년 기준) ‘도시안전국 교통과’, 남원시청 담당과(2021년 기준) ‘교통과 교통행정’, 김제시청 담당과(2021년 기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 관리방법

-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시 관리부서에서 주변 주요 승강장 위치 확인
- ② 가장 가까운 ADE 위치 등록 및 관리
- ③ 시내버스 승강장 홍보물 제작 및 부착
- ④ ADE 위치 변동 없을시 유지 가능
- ⑤ 6개월~1년 기간에 따른 상시 관리 및 체크 필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전북지회			
설립연월일	2005. 5.	대표자	이혜자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안정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사회복지사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해 노력함</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위한 노력, 관계자 연수, 교육복지우선지원 운영관련 컨설팅, 사례관리 자문 등</li> </ul>		

##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전문성 강화

### 제안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복지 수요 학생이 증가하고, 소득 중간 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과정·결과가 하위 계층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년 4월 아동권리보장원 조사결과, 5시간 이상 홀로 가정에 있는 아동 27.7%
  - 교육 분야 양극화 산출 결과,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학습시간, 부모의 학습지원 등에서 중간집단이 하향으로 편향된 경향성이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2020)
- 교육복지 대상(저소득층 학생)은 복합적인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별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함.
  - 위기요인 : 빈곤, 낮은 자존감, 부정적 양육, 학습부진, 정신건강 문제, 사회성 부족 등
- 교육복지 대상(저소득층 학생)을 효과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영역(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이지만, 전라북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는 15%에 불과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북도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전문인력 배치 저조
  - 전라북도 학교(초,중,고,특) 778개교 중 120개교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음. 따라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율은 전라북도 전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전라북도 아동빈곤율은 전국 최대이며, 코로나19, 공장이전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함
  - 고등학교 학생 돌봄·안전망에서 사각지대 발생 - 현재, 초·중학교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학교급 간 학생 중심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짐. 따라서, 고등학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 예시) 중학생 때 관리하던 비행 청소년을 겨우 설득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는데 거기서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돌봐주는 인력이 없어 자퇴함(매일신문, 2021.12.7.)

(전라북도 전문 인력 배치 학교 수)

급별	학교 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교 수	비율	비고
초등학교	425	63	14%	
중학교	210	51	24%	
고등학교	133	6	4%	
특수학교	10	0	0	
합계	778	120	15%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내 배치된 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 **학교 내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배치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우대 조항 신설 필요**

- 학교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적 수련을 받은 인력으로 이러한 고급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제도가 시행됨(2020.12.12.)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건: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후 1,000시간 수련 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함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20년 12월 12일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2020.11.30.)

**정책제안**

1. 초, 중, 고, 특수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2.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3. 학교내 사회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 확대 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우대 조항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북지회			
설립연월일	2002. 2. 19.	대표자	박희수
회원시설수	22개소	회원종사자수	400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 내 노인복지관의 육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제안</li> <li>전북도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li> <li>회원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 동아리, 해외연수 사업</li> </ul>		

##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한 맞춤형노후준비 통합지원센터(사업)

### 제안배경

- 2022년부터 시행되는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법에서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는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단편적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음
- 이처럼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함께 노인의 욕구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 즉, 본인이 원하는 노년 생활 영위를 위해, 전문상담을 통한 건강, 주거, 여가, 소득,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계획·제공·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노후준비 종합진단과 전문상담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국 100여개 국민연금공단을 거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공단의 특성상 제공 서비스가 주로 노후소득과 같은 재무상태를 위주로 분석되고 있어, 이와 별개로 노인의 건강, 주거, 여가, 교육 등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의 노후생활 또는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상담이 부재한 상황임
-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이와 관련한 상담과 연계가 일부 가능하지만 현재는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의 부재 역시 한계임.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11호,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p> <p><b>제3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관련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11호,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 이미 노후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중인 노인복지관 인적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용 중인 노인들과 이용예정인 은퇴노인들에게 전문상담과 서비스연계, 교육지원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통합서비스 제공(맞춤형노후준비통합지원서비스 or 맞춤형노후준비통합지원센터)
-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평생교육을 통해 인생 2막의 실현등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 노후준비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노후설계분석(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전문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 상담, 심리 등 노후설계 전문인력 지원

**소요예산**

- 매뉴얼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0,000만원(1차년도)
-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22개소=4,400만원(연간)
- 전문인력 인건비: 3,500만원×2명×22개소=154,000만원(연간)

한국시니어클럽협회전북지회			
설립연월일	2007. 1.	대표자	김효춘
회원시설수	15개소	회원종사자수	288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사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와 각 회원기관의 권익보호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교육 및 훈련·정책개발·조사연구사업 등의 제반사업을 함으로써 일하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지역 내 15기관의 권익보호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사업</li> <li>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조사연구, 정책개발을 통해 일자리 방향성 제시</li> <li>활기차고 품위 있는 노후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 개발 및 확대 보급 노력</li> </ul>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제안배경

-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젊은세대의 노인부양의무 가중 가속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노인빈곤 심화의 지속
-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변화 요구(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분야 제시(전북 노인인구의 특성, 지역 환경의 특성 미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의무 가중 가속화로 젊은 세대의 지역유출이 가속화될 것임.**(지역 인구의 감소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전북의 노인인구는 2018년 대비 2045년 두배 가까이(34만6천여명 → 72만9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대략 41만명 감소(125만여명 → 84만6천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전라북도 2020. 2021「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세미나」)
- **단기간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노인빈곤은 심화, 노인 일자리사업의 성격변화 요구(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 전북의 베이비부머세대는 노후준비가 잘 안된 세대임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세대로,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며, 취업의 이유로는 노후준비 및 생계자금 마련인 것으로 조사됨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분야 제시가 아닌 전북에 맞는 노인인구의 특성, 지역 환경의 특성 반영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취약**
  - 전북의 특성에 맞는 현장맞춤형 일자리개발을 위한 기초지자체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일자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취약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책제안

- 한국시니어클럽협회전북지회가 전북 노인일자리개발과 개발시스템 구축의 거점 역할

- 지역 노인일자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보다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세분화 및 개발 필요

- 획일적인 수요처를 통한 사업개발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담기관의 직접 사업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인력지원의 법적 근거 필요,

- 전라북도 15개 시니어클럽이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 시스템구축

- 현장조직의 일자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전북지부			
설립연월일	2009. 3. 24.	대표자	강철홍
회원시설수	88기관	회원종사자수	약 1,700 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에 허가 설립된 법정단체로 노인장기기관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한 균형 발전 도모와 회원시설을 위한 정책 건의, 교육훈련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대외적인 학술교류. 협력사업 등</li> </ul>		

### □ 전북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직업 안정 도모 및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li> </ul>
<b>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이후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힘들고 어려움속에서도 감내하며 나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량이 가중되며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근무하지만 종사자처우개선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에 이직률 또한 높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급자는 상승하는데 이에 준해 종사자수는 부족하여 인력난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li> </ul>
<b>정책제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자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복돋고 그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li> <li>이에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복지시설 1년 이상 전 종사자 수당지원을 제안합니다.</li> </ul>
<b>소요예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년수 5년 미만 : 50,000원, 5년 이상 : 100,000원 지원</li> </ul>

전북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협회			
설립연월일	2009. 5. 14.	대표자	김선
회원시설수	12개소	회원종사자수	185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전북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고 회원의 권익증진과 연대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책대안제시</li> <li>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li> <li>3. 시설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사업</li> <li>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li> </ol>		

## □ 소규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제안배경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가고 있음에도, 소규모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과중된 업무량과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분야의 업무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날로 세분화 되는 근로기준법에 턱 없이 부족한 인력배치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켜내고 있다.
- 과도한 업무로 소규모시설 종사자들은 번아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직을 초래하고 있다.
- 계속되는 악순환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1. 교대인력 채용 시 2호봉으로 한정 지은 예산으로 인한 경력자 채용이 어렵고, 미 경력자 채용 또한 어려움.
2. 인력배치기준이 다름 - 소규모시설(정원 29인 이하) / 입주자 한 사람의 차이로 정원 30인 시설부터는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상담평가원, 영양사, 치료사 등 인력 배치기준이 다름.
  - ① 사회복지시설 관련 동일한 행정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행정전담인력 미 지원으로 입주자를 지원하는 생활재활교사가 이를 지원하고 있음
  - ② 입주자(장애인) 지원과 행정업무지원을 동시에 함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 중
3. 소규모시설 추가인력지원 시급 - 소규모시설 중에서도 정원이 20여명인 시설에서는 종사자 1~2명이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입주자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업무과중 또한 누적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옴. 연차, 병가 등 사용 시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에 대한 업무공백 발생

4.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신고시설은 지원이 더 열약함
  - ① 인건비, 운영비 70%만 지원되고 있음
  - ② 종사자 채용함에 있어, 30%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인 시설장이 지고 있음
5. 개인운영시설(완화된 조건) 때 일한 사회복지경력이 호봉의 미 인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급여, 연차, 퇴직금 등 모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 관련근거

- 장애인 복지시설관리 안내 책자

### 정책제안

1. 교대인력채용관련 종사자 채용 호봉의 제한을 높여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한도 내에서 미경력자 채용으로 발생한 여유 예산안에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2. 30인 이상의 시설과 동일하게 전담인력을 지원
3. 20인 이하 시설의 인력기준 보강
4. 인건비 70% 지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대한 100% 운영비, 인건비 지원
5. 개인운영시설(완화된 조건)로 신고된 기간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북협회			
설립연월일	1998. 8. 12.	대표자	조종환
회원시설수	41개소	회원종사자수	1036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복지시설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 회원시설간의 정보 교류, 유대를 강화하고 시설의 권익과 사업의 활성화,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사업, 이용인 한마당축제, 종사자 워크숍 등.</li> </ul>		

### □ 거주시설 입소기준 적용현실화 및 의료급여기준 완화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입소기준 인정점수(240)을 받지 못하여 지역사회 내 방치됨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주시설의 이용 장애인이 의료수급에 탈락(의료급여자격상실)이 되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보호자 외면으로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되어 짐.</li> </ul>
<b>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중증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받아야하며 성인의 경우 240점 이상을 받아야함. 국민연금공단의 조사표 기준 문항별 점수 편차가 크고 당사자 장애인의 사회성 및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조사자에 따라 점수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주거지원을 위해 시설퇴소를 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시도해보지만 지역적응 실패로 인해 시설재입소를 해야 할 경우 인정점수 240점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도 못하고 지역돌봄도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됨. 또한 시설입소하여 생계급여는 지원받지만 부양가족의 소득 변화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탈락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의료비 책임을 못 지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됨. 기저질환이 많아 치료와 치료비가 많이 든 거주장애인에게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됨.</li> </ul>
<b>관련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제60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8page(입소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동법 제17조(급여의중지 등)</li> </ul>
<b>정책제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나 시설입소를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원 현장조사 시 시·군 복지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의료급여 탈락자들에게는 한시적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함.</li> </ul>

## □ 사회복지종사자 현실적 직책수당 마련

### 제안배경

-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직책수당이 없어 팀장, 과장 등의 직책을 주더라도 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승인을 받아 비지정 후원금으로 줄 수 있지만 후원금이 넉넉지 않은 시설은 어려운 상황.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조직이 잘 유지·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이 절실히 필요함. 시군 재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구분에 따라 후원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설운영의 질적 차이가 있음.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 관리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정책제안

-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직책수당 보조금 지원 요청 (보조금 집행, 사회복지 업무수당으로 제한하지 말 것)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전라북도협회			
설립연월일	2006. 8. 17.	대표자	조상완
회원시설수	27	회원종사자수	156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시설의 교류·협력,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전문성 증진을 통한 직업재활시설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li> <li>• 회원시설에 대한 자문 및 교육지원</li> <li>• 장애인생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li> <li>•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li> </ul>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대상 보충급여제 도입**

**제안배경**

- “최저임금법 제외 인가 제도 허점...도내 장애인 저임금 노동 만연”  
(전북도민일보 2021.10.17.)
- 직업재활시설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만성적인 저임금 상태.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보충급여 제도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그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의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취업한 곳이 일반 기업 이거나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급여의 하한을 두지 않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에 더해, 일부 보호작업장 등에서는 구조적인 인건비 부담과 낮은 근로능력을 이유로 장애근로인과 짧은 시간(적게는 1일 1~2시간) 근로 계약함에 따라 비상식적이며 반인권적인 저임금 상태가 지속.
-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기업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경제 주체로서 경쟁력이 낮아,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유지”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매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학생들은 그 숫자(도내 2021년 2월 졸업 장애 학생수 364명)가 계속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 되고, 그 일자리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

**관련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2조
- 『최저임금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4조

## 정책제안

### 1.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충급여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 법정 최저 임금의 50%를 보충급여로 지급 -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부담을 지자체가 나눠짐으로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실질적 폐지를 이끌어냄”

### 2. 기능보강 지원액 확대

- 직업재활시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 ‘투자’를 통한 지원이 절실

### 3. 종사자 충원

-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중 <직원 배치기준>(2021년판 255쪽)에 따른 종사자 충원

## 소요예산

- 전라북도 내 현재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판매시설 1곳과 직업적응훈련시설 3곳 제외,

도내 25개(근로사업장 2, 보호작업장 23) 시설에 약 600명의 ‘이용 장애인’.

2022년 법정 최저임금 월급(209시간 기준) 1,914,440원

그 50%를 보충급여로 지급한다면 소요 예산은 대략 연간 69억원.

( 6,891,984천원 = 1,914,440 \* 0.5 \* 600 \* 12개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전북협회			
설립연월일	2018. 4. 27.	대표자	박실하
회원시설수	30개	회원종사자수	136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게 하며,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회원시설 간 연대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 시설종사자 전문교육, 시설 이용자 인권과 복지증진, 시설 이용자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원</li> </ul>		

### □ 전라북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질적서비스를 위한 제안

#### 제안배경

- 전라북도 시설 인력에 상당수가 원장을 포함한 3인이며, 남녀 직원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업무과중 및 근로기준법에 지시하고 있는 연차 사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인력부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사무원)
  - 사회재활교사 외 인력이 없어 사회재활교사가 사무행정업무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음 (회계, 인사, 요청자료 등)
  - 사회재활교사가 사무원의 업무인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 사회재활교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간 공백과 서비스 내용의 질적 저하로 인한 이용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 발생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3명	* 이용 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사무원	1명	* 시설 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1명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 정책제안

- 보건복지부의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용(사무원)
  - 사무원 인력 추가 요청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전라북도협회			
설립연월일	2001. 4. 24.	대표자	이명재
회원시설수	13개기관	회원종사자수	400여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관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구심체로 육성, 발전시킴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확대</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친선을 위한 교류사업,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li> </ul>		

## □ 전북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법정최소인력 배치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관 전북협회 임시총회(2021.11.29.) 시 다수의 회원기관이 의견을 상정함.</li> </ul>
<b>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도내 현재(2021.12.31.) 13개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중(임실, 순창제외)</li> <li>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법정 최소인력 20명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5곳으로 장애인복지관 주요기능과 역할 수행에 어려움 초래 (완주, 부안, 진안, 장수, 고창)</li> </ul>
<b>관련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 기준)</li> </ul>
<b>정책제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내 장애인복지 기본가치 실현과 권리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최소인력확보를 위한 적극적 자원마련 및 반영</li> <li>전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연차별, 단계적 문제해결 방식의 최소한의 대안 요구</li> </ul>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전북지회			
설립연월일	1984년	대표자	하정두
회원시설수	4개소	회원종사자수	818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해 지회의 4개 시설이 지원하고 노력하여 협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4개 시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봉사 정신에 입각한 운영, 인권과 의사가 존중되는 생활인 중심의 운영,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개방 자원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생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li> </ul>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업달성을 위해 지회 소속 4개 시설이 함께 지원하고 노력함.</li> <li>시설의 개방과 편견해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도모함.</li> <li>생활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옹호 및 사회재활에 필요한 각종프로그램 지원</li> </ol>		

###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인원확충

현황 및 문제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사자 인건비 현실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보조금이 정부로 환원이 되었지만 인건비 부분이 매년 3년 전 기본급으로 지급 받고 있음.</li> <li>- 공무원수준으로 임금현실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사자 인원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전국적으로 인원을 다소 확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사용 관련</b>                      [정신요양시설 복지부 기능보강 지원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지원 단가: 국비(50%), 지방비(50%)</li> <li>- 1,923,000원/㎡(신축, 증·개축)</li> <li>- 698,000원/㎡(개보수)</li> <li>- 전국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는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입찰 후 낙찰가 금액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설예산 과목 중 시설비, 자산 취득비 사용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에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li> </ul> </li> </ul>

- 원인
  - ① 시설의 노후화되어가고 있어서 시설유지 등에 매년 많은 예산 증가
  - ② 생활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 **관리직, 기능직 임금 현실화**

-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안전관리요원
-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 위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본급이 낮아 직원 채용 시 지원을 하지 않아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직원의 업무 과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인들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특히 경비원, 안전관리요원 직종은 업무가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업무가 많고 더운 날씨에는 더욱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직종으로 지원을 회피하는 직종으로 채용이 잘 안 되는 직종임.
- 지원을 회피한 직종으로는 조리원, 위생원도 마찬가지임.

**정책제안**

•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보수체계 개선이 시급함.
- 현 시점 년도에 맞는 기본급으로 지원을 해주어야되며, 임금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체계개선이 시급함.

• **종사자 인원 확충**

- 2021. 10. 31 현재 전북 4개 시설 추가인력 필요 현황

시설명	2021년도 지원인원	채용인원	추가필요인원	비 고
스마일빌	6	6	생활 복지사: 5 간호사 및 조무사 : 3 (8명)	
삼정원	7	7	생활 복지사: 4 간호사 및 조무사 : 8 (12명)	
정심원	6	6	생활 복지사: 5 간호사 및 조무사 : 5 (10명)	
참사랑원	7	7	생활 복지사: 7 간호사 및 조무사 : 5 (12명)	

•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사용 관련**

- 2021년도 복지부 발행 정신건강사업 안내 246P에 따르면  
(낙찰차액 활용사업: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의 안전성 및 긴급성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바.

- 기재부와 복지부에서는 사용불가라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시설 생활인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설예산 과목 중 시설비, 자산 취득비 사용관련**

- 보조금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용 확대 시행.

- **관리직, 기능직 임금 현실화**

- 생활복지사 및 생활지도원 기본급으로 시행.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설립연월일	2003. 6. 25.	대표자	박종숙
회원시설수	25기관	회원종사자수	150여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폭력상담소, 시설협의회가 연합하여 상호 유대 강화와 정보교환, 협력교류를 통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으로 한다.</li> </ul>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연대사업</li> <li>2.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문제 등 예방교육 및 치료사업</li> <li>3. 상담원양성교육, 연수훈련 및 보수교육사업</li> <li>4.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문제 등 인권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사업</li> <li>5.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운동사업</li> <li>6.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관련기관, 단체와연구, 교육, 교류협력사업</li> <li>7.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부대사업</li> </ol>		

## □ 여성폭력상담소및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망강화

### 제안배경

-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 협의회 소속 종사자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연대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 협의회소속 종사자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 협회 회원기관 중 해바라기센터, 긴급전화1366 등을 제외하고 상담소·시설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전문성 향상을 떨어뜨리고, 빈번한 이직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개입과 피해자지원, 여성폭력예방,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 여성가족부의 힘없는 정책은 현장의 열악함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폭력기관 처우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이어서 다른 지역의 처우를 부러움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전남, 광주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연대 활성화
  - 여성가족부지원사업(국·도·시)으로 진행했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은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한 인식개선, 폭력예방을 위해 각 지역연대로 추진해온 뜻깊은 사업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다.(총예산 720만원)
  - 그러나 전북도에서는 사업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여성안전지연대’의 이름으로 도비, 시비(200만원) 소액지원으로 운영되었다가 2022년은 이것마저 180만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형편이다.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올바른 성인식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연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정책제안**

-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 협의회 소속 종사자처우개선
-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연대 활성화

전북사회복지관협회			
설립연월일	1987. 3. 1.	대표자	장정열
회원시설수	18개소	회원종사자수	360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복지사업(사례관리 기능,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주민조직화 기능)</li> </ul>		

## □ 전라북도내 지역사회복지관 추가설치

### 제안배경

- 사회복지관은 1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사회복지시설로 지역사회복지를 선도하고 감당해온 대표적인 주민이용시설이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주민 복지욕구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사업량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함에 있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미설치된 도내 지자체에도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운영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북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18개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5개소, 군산 2개소, 익산 3개소, 정읍 1개소, 김제 3개소, 남원 1개소, 부안 1개소, 고창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지역에는 여전히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완주군이 현재 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미설치 지역인 5개 지자체가 지역사회복지관 부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다양한 복지혜택(사례관리, 복지서비스제공, 주민조직화사업 등)으로부터 소외될 염려가 있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동시행규칙 제23조

### 정책제안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이상 5개 군에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 □ 전라북도내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비 증액지원

### 제안배경

- 사회복지관은 국·도비 예산 지원없이 전액 각 시·군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된다. 다만 여기에 더 주목할 것은 운영비외 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사업비는 대부분 후원금, 전입금, 자체수입(사업수입, 잡수입 등), 외부 프로포절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전입금을 제외한 자원은 확정되지 않은 비정기적인 기금이다. 때문에 해마다 사업계획에 의거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현재는 사회복지관사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양적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사업비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서비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정한 사업비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현재 수준보다 보다 획기적인 증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북지역에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별 일천만원(10,000,000원)의 지역복지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소 복지관 별로 1억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동시행규칙 제23조

### 정책제안

- 지역복지사업비 지원금 현실화  
- (복지관당 현 10,000천원 → 100,000천원으로 증액지원)

### 소요예산

- 사회복지관 18개소\*1년\*100,000천원 = 1,800,000천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북지부			
설립연월일	2000. 10. 13.	대표자	임탁균
회원시설수	17개 지역자활센터	회원종사자수	142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 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생산·협동·나눔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 가치가 우선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지역자활센터의 협의에 의한 공동사업 집행 및 조정</li> <li>2. 각 지역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3. 각 지역자활센터 상호간 운영경험 및 정보의 교류</li> <li>4. 각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세미나 개최</li> <li>5. 각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언 및 권고</li> <li>6. 각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li> <li>7. 지역자활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li> <li>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li> <li>9. 지역주민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교양교육, 직업·기술·전문교육 및 건강과 보건교육, 지역 사회 교육 등 기타 학교 교육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사업</li> <li>10. 평생교육사업 수행</li> <li>11. 그밖에 지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li> </ol>		

## □ 자활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별 운영지원

### 제안배경

- 만연한 불평등 구조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변화 등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일자리 위기의 심화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큰 폭으로 증가(2021년 8월 말 현재 44,732명으로서, 2020년 8월말 39,863명 대비 4,869명 증가) 전북지역 역시 2021년 10월말 **2,346명**으로 2019년대비 14.5%가 증가했으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일반수급자 증가 폭이 크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감소하였음.
-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미약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자활사업 정책목표의 다변화(정서, 사회, 경제적 자활의 사회통합지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기능
  -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전달체계의 노하우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자 및 근로능력 미약자의 증가, 사회통합지표로서 경제적 자활과 정서, 사회적 자활 목표에 접근하는 정책목표 다변화 속에서 이를 담당해야 할 실무인력과 처우가 매우 열악.
- 현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으로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구분 없이 규모지원제도에 따라 유형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 차등 지원
  - 전북 17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142명(정규:109, 계약:33)

- 2021년 3월 조사결과 센터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평균 93.4% 이상 차지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기본 운영경비 책정도 어려운 현실임.
-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정원표상 종사자 미충원
  - 전북지역자활센터 규모에 따른 정원표상 정원-123명, 현원-109명, 미충원-12명
- 규모별 운영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미사용 및 축소
  - 종사자 호봉삭감, 명절수당 등 조정 및 삭감
- 자활센터 운영보조금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93.55% 차지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종사자 처우는 88.8%로 매우 열악(2021.3.)
-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준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별도의 예산책정이 절실히 필요.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14시·군 전체 조례 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 발의 / 2021.9.7. / 안호영, 윤준병 의원)

**정책제안**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부족분에 대한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소요예산**

계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부담	산출근거
510,000천원	153,000천원	357,000천원	부족분 센터당 3,000만원×17센터×30%

전라북도가족센터협회			
설립연월일	2010. 3. 10.	대표자	이지훈
회원시설수	14	회원종사자수	273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li> </ul>		

## □ 전주권역 가족센터 확대 설치

### 제안배경

- 전북지역의 세대 수는 816,191가정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다문화 가족은 43,832명임
- 전주시의 일반세대수는 273,753가정으로 전라북도의 33.5%를 나타내며, 다문화가족은 9,504명으로 전라북도의 21.7%에 해당 됨
- 전라북도의 전주권역에 일반세대수가 많고 다문화가족의 수도 많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체계의 확대구축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가족부는 21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고 가족센터로 명칭을 전환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 의회 제387회 회의에서도 전주시가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가족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요구
- 전주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세대수와 다문화가족 수가 많아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발생

###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조례 및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 정책제안

- 전주권역에 있는 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서 명칭을 부여하고, 가족센터로써 기능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지원
- 1개소는 1개소는 국비센터로 지정 지원하고 1개소는 지방비센터로 지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시 완산구 가족센터로 기능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주시 덕진구 가족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정 지원

### 소요예산

- 1억5천만원
  - 가족센터 통합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도비 및 시비)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연월일	1999. 2. 1.	대표자	이병관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 및 활동을 조성하고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li> </ul>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li> <li>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li> <li>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li> <li>4.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li> <li>5. 사회복지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li> <li>6.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업무지원 및 협력지원</li> <li>7.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 사업의 진흥</li> <li>8. 공동모금사업의 지원</li> <li>9.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지원</li> <li>10.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li> <li>11.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li> <li>1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li> </ol>		

□ **민간중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강화**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낮아 능동적 복지사업을 수행 하는데 한계가 있음.</li> </ul>
<b>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li> <li>민간중심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하여 연계협력, 조정, 복지사각 지대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li>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은 일부 시군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또한 부족한 상황임.</li> <li>이에, 민간중심 복지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확대마련이 필요함.</li> </ul>
<b>관련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li> <li>예산근거 : 동법 시행령 제17조 “협의회의 운영경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li> </ul>
<b>정책제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도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li> </ul>

## □ 전북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 제안배경

- 전북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한 건물 내에 상주할 경우 기관 간 연계협력, 협의조정 등 정보연결망 구축으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 복지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북 사회복지회관은 500평 남짓 면적으로 다양한 복지기관이 상주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현황 :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 회관(센터) 운영

구분	면적	규모	구분	면적	규모
인천	7,025㎡	지하1층, 지상7층	전북	1,128㎡	지상5층
광주	2,420㎡	지하1층, 지상2층	강원	3,450㎡	지하1층, 지상5층
세종	552㎡	지상2층	경남	28,264㎡	지하1층, 지상3층
제주	2,014㎡	지상2층	충북	4,121㎡	지하1층, 지상5층

\* 서울 및 대전 : 복지타운 이용

- 전북사회복지회관은 전주시 소재 지상 5층, 연면적 500평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직능협회 3개소와 도단위 기관 3개소,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북지역에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능협회 등)의 운영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전북형 사회복지타운을 형성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 협의조정 및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등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종합센터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정책제안

- 다양한 복지중심 기관이 상주하여 연계협력, 협의조정 할 수 있는 전북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 □ 전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및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강화

### 제안배경

- 전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전북광역푸드뱅크)는 도내 14개시군 25개(기초푸드뱅크 17, 기초푸드마켓 8개소)에 기부식품의 배분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21년말 기준 접수금액-92억원, 배분금액-87억원으로 전국 6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실적이 향상되고 있음.
- 하지만 향상되는 실적에 비해 사업담당 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는 서비스의 질 감소로 요인이 되고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의 비효율성
  - 도내 14개시군 25개 기초푸드뱅크·마켓에서는 각 지역내 접수물품 및 전국푸드뱅크 지원물품을 수령하여 지역사회에 전달해오고 있음. 하지만 전국푸드뱅크 세종중앙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수령할 시 각 기초별 차량운행 및 기부물품의 상하차를 진행하여 이동 및 배분에 효율이 떨어지며, 장시간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및 종사자 피로도 상승, 배분 등의 업무시간 감소로 사업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위기대응 능력의 부족
  - 광역푸드뱅크물류센터의 부재로 인해 재난·재해 및 긴급대상자에 대한 응급지원 물품을 세종중앙물류센터를 통해 수령/배분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관련근거

-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책제안

-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대지/건물 및 시설의 임대 또는 물류센터 신규 건설)
- 도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종사자 인건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지원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설립연월일	1975. 3.	대표자	이원식
회원시설수		회원수	66,918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발급 및 관리,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회원관리 및 지원사업</li> <li>•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 사업</li> </ul>		

## □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

### 제안배경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확산
  - 서울('11년), 제주('15년), 인천('20년), 대구, 부산('22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의 단일임금체계 도입 중
  - 서울의 경우 21년까지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처우를 보장하여 단일임금체계 완성
  - 지역별로 사회복지사의 임금 및 처우 격차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의 임금체계 상이
  - (보건복지부)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제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차별적 기준으로 인력 채용 및 근속연수 등에 악영향
  - (유형별)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각각의 상이한 인건비 기준 존재
  - (지역별) 현행 서울,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 개별기준 존재('22년 대구, 부산 개별기준 적용 예정)
  - (관리주체별)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부처에 따른 개별기준 존재로 임금 격차 발생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의 보수 수준 향상
  -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정책제안

- 전북형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연차별 처우개선 계획 발표
- 법정 인력 배치기준 미준수시설에 대한 인력 확대 방안 확대

##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권익옹호 기구 조성

### 제안배경

- 전북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
  - 2020년 전북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및 정신건강 조사(전라북도사회복지사 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요청사항의 1순위 휴가, 2순위 종사자 안전 및 인권옹호 조례제정, 3순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수준의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경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한 전북의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20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는 63.1%(394명), 클라이언트 폭력 중 언어폭력이 49.4%로 가장 높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및 안전 위협의 공포나 두려움 경험'이 41.2%, 신체적 폭력 35.9%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폭력과 맞물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의 위협이 노출됨.
    - 2021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내놓은 '사회복지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함.

### 관련근거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2조(인권 및 권리 옹호)에 근거한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 도민 전체의 포괄적 인권부서인 도 인권담당관실이 아닌 별도의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 기구를 독립 조직으로서 운영,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정책제안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센터(인권센터)' 설치운영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연월일	2006. 3. 22.	대표자	송은용
회원시설수	58개소	회원종사자수	1,540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읍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 및 활동을 조성하고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li> </ul>		

## □ 시·군 단위 지역 보건복지회관 건립

### 제안배경

- 민간복지체계의 구심체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14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독자적 건물이 없이 임대건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지역내 사회단체들의 위상과 규모에 비해 월등한 타당성(복지관련 법, 제도, 정부 정책 예산비중 등)과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비해 행정의 관심과 배려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
- 각 시·군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연합기구로서 물리적인 교류 협력과 자원의 연계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취약한 물리적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 협력의 산실이 되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거버넌스 행정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의식 함양과 조사연구, 각종 사회복지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복지의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방법 및 절차
  - 기존공간 매입 후 증개축 : 공공성 건물이나 빌딩 등 500평 내외의 건물을 매입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신축 : 통합복지가 요구되는 시민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단체 및 시민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배치
-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 관리 주체 : 사회복지협의회
  - 주요단체 공간배치 : 보건분야(의사회 및 간호사회)와 복지분야(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협의회, 6개 직능단체 등)사무실 입주,
  - 공유공간 : 소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시민복지지원실, 원스탑 복지지원실, 복지인쉼터, 복지 동아리실, 정책연구지원실 등.

### 소요예산

- 14개시·군×90,000천원(도비30%)=1,260,000천원
  - 1개소당 약30억 기준, 전북도비는 30%로 산출함.
  - 각 시·군 부담은 시·군에서 논의

##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인건비) 지원

### 제안배경

- 사회복지협의회는 국가가 법으로 명시한 공익기구로, 사회복지사업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제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임.

###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지방정부 포함)의 법적 책임과 의무 불이행과 전문인력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
  - 정부의 법정 위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의 운영비 보조에만 한정되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2명의 유급직원에 의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울러 동법(同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구인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과 본 협의회 미지원은 법리적 적용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못함.
2. 법정 기구로서의 사업추진 동력부족
  - 법에 명시된 사회복지협의회는 핵심 기능은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연계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사회의 복지욕구를 조사 연구하고,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 그리고 관내 모든 복지시설의 전문화와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이 핵심 기능임.
  -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로 전문인력의 직무 유지는 물론 업무 추진의 동력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잦은 이직으로 시민들과 회원시설관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설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 예산지원 근거 : 동법 시행령 제17조 “협의회의 운영경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주요사업 : 동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정책건의, 조사연구 등 11개 분야사업

### 정책제안

1. 법에 명시된 설치 근거에 의거 운영비 지원
2. 산출근거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용
3. 향후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촉구 : 더 이상 법에 명시된 지원근거에 의해 정부가 수행해야할 필수사항을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임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64,300천원
  - 운영비 : 12,000천원 \* 11개소 = 132,000천원
  - 인건비 : 도비부담 전문인력(30%) 9,450천원 \* 14개소 = 132,300천원
    - ※ 연봉 31,500천원의 1인 인건비 기준임(보건복지부기준 사회복지사3호봉)
    - ※ 각시군 부담은 시군에서 논의

## □ 주민도움센터(舊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정착운영

### 제안배경

- 현재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도움센터(舊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사업의 주된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즉 고령자와 장애가진 거동불편인 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전라북도 특수 시책으로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본 사업의 정책적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해 우수시책으로서 지속적 평가와 실증적 실천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연구된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의 효과성 평가’에서 주민도움센터의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종사자의 높은 직무 가치감 (5점 만점 중 4.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평균 185만원)과 대인스트레스, 역할과다는 잦은 이직의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주민도움센터 직무의 연속성이 매우 취약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 관련근거

- ‘2021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효과성 평가 연구’보고서

### 정책제안

#### 3-1.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의 현실화

- 현재 최저시급에 맞춰져있는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여 동종 복지종사자의 평균 임금에 준하는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아울러 향후 추진될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맞추어 추진 주체 또는 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2. 전북도 특수 시책으로서의 주민도움센터사업의 성과개발과 확장성 제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도움센터 사업의 주된 내용이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전라북도 특수 시책으로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본 사업의 정책적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 연구와 실증적 실천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3-3.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효능감 강화

- 주민도움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수퍼비전 등을 수행해야 하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센터 간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보건복지부(이용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등 1,182,000천원
  - 운영비 : 12,000천원 \* 11개소 = 132,000천원
  - 인건비 : 전담인력 연봉25,000천원 \* 14개소\*3명 = 1,050,000천원

전라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설립연월일	1991. 7.	대표자	김대환
회원시설수	15개 지부	회원종사자수	1,600여명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행정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 사회복지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공사회복지발전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함.</li> </ul>		

### □ 도민중심의 맞춤형 전문전달체계 구축

#### 제안배경

- 복지 욕구의 다양화, 세분화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역량이 있는 인력으로 맞춤형 전문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 최근 복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상담 내용도 심화되고 있어, 민·관 연계가 활성화 되는 등 고도의 전문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로 하는 시기임.

#### 현황 및 문제점

- 전북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조직되어 있으나, 2021년 12월말 기준 전문직 팀장 배치는 42% 그치고 있고, 일부 시·군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원의 상시 결원과 복지 이외의 업무 등이 분장되어 있어 효율적인 복지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태임.
- 전북 맞춤형복지팀장 배치 현황 (2021.12.31.기준)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맞춤형 복지팀	244	35	27	29	23	23	19	14	11	6	7	12	11	14	13
사회복지직 팀장	103	11	13	13	9	13	9	8	2	1	5	5	4	7	3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 원칙)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임.

#### 정책제안

- 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2배 증원
- 복지부서장 및 팀장 사회복지직 배치로 전문성 강화

# 6.1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연대 추진경과

03



## 6.1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연대 추진경과

- (명 칭) 6.1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연대
- (목 적)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전북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정책화 시켜 적극적으로 제안, 공약으로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및 사회복지현장의 내실을 다지며 나아가 복지전북을 건설하고자 한다.
- (공동주최)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참여기관) 도내 사회복지 직능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51곳
- (추진경과)
  - 2021. 11. 16. 전북 사회복지 직능단체 회장 및 실무자 연석회의 개최  
: 지방선거 관련 추진방향, 대응방안, 현안문제 등 의견 공유 및 협조
  - 2021. 11. 21. 전북 시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및 실무자 연석회의  
: 지방선거 관련 추진방향, 대응방안, 현안문제 등 의견 공유 및 협조
  - 2021. 12. 15.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정책조정위원회 회의  
: (가칭) 6.1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 2021. 12. 28. 전북사회복지연대 6.1지방선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 위촉, 위원회 명칭 선정, 위원회 운영방향 및 로드맵 논의
  - 2022. 1. 13. 전북사회복지연대 6.1지방선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직능별 정책제안 사항 목록 분류 및 정책과제 도출방안 논의
  - 2022. 1. 25. 전북사회복지연대 6.1지방선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의제 및 중점공약에 대한 세부내용 논의, 역할분담
  - 2022. 2. 15. 전북사회복지연대 6.1지방선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의제 및 중점공약에 대한 세부내용 2차 논의
  - 2022. 2. 28. 전북사회복지연대 6.1지방선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4대의제 및 15대 핵심공약 내용 정리 및 의견수렴
  - 2022. 3. 17. 6.1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제안 보고회  
: 직능협회,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시군사회복지사협회지회 등 정책제안 결과 보고

## □ 전북사회복지연대 참여기관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협의회
- 전라북도가족센터협회
- 전라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전라북도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라북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전북노숙인시설협회
- 전북노인복지협회
- 전북사회복지관협회
- 전북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전북아동복지협회
-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 전북정신건강연합회
- 전북청소년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전북지부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북지회
- 한국시니어클럽전북지회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전북지부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전라북도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북협회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전북협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전북협회
-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전북지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북지부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전북지회
- 전라북도 14개 시군사회복지협의회
- 전라북도 11개 시군사회복지사협회

## □ 6.1지방선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번호	성명	소속	비고
1	이병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공동대표
2	이원식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공동대표
3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위원장
4	박경수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위원
5	이원식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위원
6	김효춘	한국시니어클럽전북지회장	위원
7	박신애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장	위원
8	박희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북지회장	위원
9	송운용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장	위원
10	안진석	삼동회 사무처장	위원
11	장정열	전북사회복지관협회장	위원
12	조종환	전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위원